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

2026. 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통보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환급	금액
6건			2	1	3	-	-	-	-	-	-
1	♥♥♥ 등 9개 부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	1	-	-	-	-	-	-
2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	1	-	-	-	-	-	-	-	-
3	♥♥♥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관리 소홀	-	-	1	-	-	-	-	-	-
4	★★★★ 등 5개 부서	실험장비 교정검사 소홀	1	-	-	-	-	-	-	-	-
5	♥♥♥ 등 2개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1	-	-	-	-	-	-
6	♥♥♥	지정폐기물 관리 업무 부적정	-	1	-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1
2.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통보)	7
3.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관리 소홀(주의)	9
4.	실험장비 교정검사 소홀(통보)	12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14
6.	지정 폐기물 관리 업무 부적정(시정)	17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 ◆◆◆,
▽▽▽, ▼▼▼
내 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험연구보조 및 청사미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3항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채용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는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채용담당부서장 및 담당자가 아닌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23.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와 같이 총 39건, 42명의 시험연구보조 및 시설물청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채용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를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
소 관 청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토양 및 유해화학 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라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7항에는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 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66호)」 제9조 제1항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환경시료에 대한 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검사기록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부서 또는 의뢰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에는 시험성적서의 작성 및 통보는 환경부 고시 [별표 2]의 표준처리기간¹⁾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시험항목에 따라 2일~16일로 별도 규정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분야의 시험·검사의 기간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환경부 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 2]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에서 수질, 대기, 소음·진동, 악취, 실내 공기질의 처리 기간이 각각 2일 ~ 16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는 대기, 소음·진동, 악취, 실내 공기질을 시험항목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20일로 설정하였으며, 수질 검사의 처리기간은 14일로 설정하여 상위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표] 환경시험검사 관련 처리기간 현황 비교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 규정 등 관련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관리 소홀
소 관 청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 보건 증진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 검체 보관 및 연구 장비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연구원 내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인 [표 1]에 위탁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²⁾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표 1] 보건환경연구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현황(2023~2026년) “생략”

[표 2] 보건환경연구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³⁾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현황(2023~2026년) “생략”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월차, 분기, 반기, 연차 점검 주기에 따라 정해진 시험 항목(외관 점검, 부하 측정, 절연저항 측정,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등)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에 따라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 수전설비 950kw, 발전 450kw

3) 수전설비 발전설비와는 별도의 시설이므로 나눠서 계약함

[표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생략”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받을 때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업자가 위 법령에 맞게 점검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그런데도, 2023 ~ 2025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및 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현행법이 아닌 과거 「전기사업법」 규정⁴⁾을 근거로 하여 필수 점검 항목 일부를 누락⁵⁾한 채 과업을 받주하였다.

또한, 감사기간 2023 ~ 2025년까지 해당 용역의 지출서류를 확인해 본 바, 대행업자는 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기, 반기, 연차 정기 점검 항목에 대한 수행 실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는 주기별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정밀 점검(절연저항 측정, 계전기 동작 시험 등)을 이행하지 않고 매월 월별 점검 서류만 제출하였음에도, 용역 감독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용역의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보완 지시나 이행 여부에

4)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1. 4. 1. 제정됨

5) 전기설비 점검 (과업지시서 발췌)

가. 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점검은 시설용량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월 일정 횟수 이상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 점검표를 2부 작성 후 1부를 우리원에 제출한다.

정기점검 : 매월 4회 이상

반기점검 :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부하의 적정여부 확인, 차단기, 계전기 등 각종 전기기기류의 동작시험

수시점검 : 긴급 요청 시 점검 실시

대한 검토 없이 대행료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 결과, 연구원의 주요 장비와 시설물을 화재 및 전기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점검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부적정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실험장비 교정검사 관리 소홀
소 관 청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험실 측정 기기의 정밀도 유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험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⁶⁾ 제4조(교정 대상) 및 제5조(교정 주기)에 의하면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 기기 간의 소급성⁷⁾을 높이기 위하여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주요 교정대상으로 관리하고 사용 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교정대상 목록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검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측정기기의 교정주기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험 데이터의 정확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유 장비에 대한 교정검사를 적기에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등 5개 부서에서는 정해진 교정 주기마다 공인교정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34대의 실험장비 중 8대에 대하여 장비 도입 후 교정주기(12개월)가 도래하거나 경과하였음에도

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5호(2024.1.2.)

7) 소급성 :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 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

불구하고 예산 부족, 사용빈도 저하, 장기 미사용 등의 사유로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중에 있다.

[표] 교정검사 대상 실험장비 및 교정검사 미실시 현황(2023~2025) “생략”

이처럼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여 측정 및 시험 결과의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어 분석 데이터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장비의 교정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실험장비 측정 결과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검사 이력 관리 및 교정검사 계획 수립 등의 자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행사와 시책 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지출과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연말, 설, 명절(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명절 선물’은 부서운영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2023. 9. 27.에 추석명절맞이 직원선물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

[표 1] 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생략”

2.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특산품의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기관·시책 등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총 7건, 3,102,000원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을 결재 받아 관리하지 않았다.

[표 2]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특산품내역 “생략”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 및 지급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예규 제1446호)」 제6조(상품권 사용제한)에 따르면 상품권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에 해당 될 경우 상품권을 구매·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사용내역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경우 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 가능하고, 내부직원 단순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지침에 맞지 않게 단순 내부직원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직원에게 지급하였고, 상품권 구매내역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3] 2024년~2025년 정원가산업무진비 상품권 부적정 구매 지급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정폐기물 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실험 및 검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보관하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1. 지정폐기물 보관규정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5]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에서는 1년간 연구원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또는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되고 기한 내 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와 같이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통해 연 1회만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2023년~2025년 지정폐기물 처리내역 “생략”

2. 지정폐기물 표지판 현행화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5]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 [그림 1]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고,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지정폐기물 표지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부서 등을 표지판에 적어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본원 지정폐기물 보관

창고 내 보관용기에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 사항 및 관리책임자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책임자, 보관기간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지정폐기물 표지판 기재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시정)